

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

1. 신청인 및 벤처기업 현황

신청인 (제2차 납세의무자)		벤처기업 (주된 납세자)		
성명(상호)		법 인 명		
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대 표 자		
주소(사업장)		사업자등록번호		
연 락 처		사업장소재지		
		벤처기업확인서 내용	번 호	평가기관
			확인일자	유효기간

2.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명세 (출자자 1명당 2억원 한도)

※ 신청대상은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·가산금·강제징수비이며,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법인세에 합산하여 기재하고, 제2차 납세의무 고지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
순서	세 목	납부번호 (연월-결정구분-세목-발행번호)	납부기한	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(원)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계				

3.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및 연구·인력개발비 현황

※ 2018. 1. 1.부터 2025. 12. 31.까지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.

순서	사업연도 (년 월 일 ~ 년 월 일)	수입금액(원)	연구·인력개발비 (원)	수입금액 중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(%)	소기업 해당여부 (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제1항)
1	~				
2	~				
3	~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. 2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4호의3 서식 부표(1)(2)] 3. 연구·인력개발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

(앞쪽)

❶ 벤처기업 (주된 납세자)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❷-1 사업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<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>

계정 과목	구 분	자체 연구개발비					
		인건비		재료비 등		기 타	
		인원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합 계			⑥		⑦		⑧
계정 과목	구 분	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	인력개발비	맞춤형 교육비용	현장훈련 수당 등	총 계
		건수	금액				
합 계			⑨	⑩	⑪	⑫	⑬

❷-2 사업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<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>

계정 과목	구 분	자체 연구개발비					
		인건비		재료비 등		기 타	
		인원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합 계			⑥		⑦		⑧
계정 과목	구 분	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	인력개발비	맞춤형 교육비용	현장훈련 수당 등	총 계
		건수	금액				
합 계			⑨	⑩	⑪	⑫	⑬

②-3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 <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>

계정 과목	구 분	자체 연구개발비					
		인건비		재료비 등		기 타	
		인원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합 계			⑥		⑦		⑧
계정 과목	구 분	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		인력개발비	맞춤형 교육비용	현장훈련 수당 등	총 계
		건수	금액				
합 계			⑨	⑩	⑪	⑫	⑬

③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단서 관련)

구분	정부출연금 교부처	관련 법령	수령일	수령금액	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

④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

구분	인정일 (고시일)	취소일	연구개발 인력							
			계		연구전담요원		연구보조원		기 타	
		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	금액

작성 방법

- ⑦ 재료비 등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건본품·부품·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.
- "⑧ 기타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·시험용 시설 임차(이용)비용을 적습니다.
- "⑪ 맞춤형 교육비용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.
- "⑫ 현장훈련수당 등"란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.
- ③, ④의 "구분"란에는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- ③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"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"④ 연구소/전담부서/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작성 방법

1. 인건비 발생 명세

- 가. "구분"란에는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(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).
- 나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(다만,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, 퇴직급여충당금 및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).
- 다. "연구전담 등 구분"란은 []에 '연구전담요원', '연구보조원', '기타' 중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- * "연구전담요원"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- * "연구보조원"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- * "기타"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.

2. 재료비 등 발생 명세

- 가. "③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- 나.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.

3.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

- 가. 해당 과세연도에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 1.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.
- 나. "⑤ 연구과제명"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.
- 다. "⑥ 연구개발비"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(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)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.
- 라. "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"란은 위탁·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·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.